

주요국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장효은*·손명희**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주요국 소액물품면세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 II.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의
의의 및 고찰 | IV. 결 론 |
| | 참고문헌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액·소량의 물품에 대해서까지 모두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행정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94조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의 관세법규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소액물품은 일반 수입물품, 특송물품,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며 별도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통상 반입경로와 무관하게 모두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관세법제상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통관간소화제도는 반입경로와 무관하게 보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에 따라 신속한 통관을 진행하도록 규정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간이통관·목록통관·우편통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나아가 관련 국내 관세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면세대상 소액물품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완성도 높은 정책 환경을 구축하자는 시사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Ⅰ 주제어 소액물품면세제도, 통관간소화제도, 통관제도, 목록통관, 해외직구

* 주저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연구위원, E-Mail: jhe621@kctdi.or.kr

** 교신저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Mail: smh0402@kctdi.or.kr

I. 서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1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액·소량의 물품에 대해서까지 모두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통관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94조에서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해외 주요국의 관세법규에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서는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액물품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면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화물(탁송품 포함),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게 되는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반입되든 그 경로와 무관하게 모두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 관세법제상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통관간소화 제도는 반입경로와 무관하게 보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에 따라 신속한 통관을 진행하도록 규정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반입되는 물품의 반입(운송)경로 및 형태에 따라 각 제도상의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이통관·목록통관·우편통관을 중심으로 통관간소화제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관세법규상 소액물품면세제도와 통관간소화제도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영국, 유럽연합(EU)의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의 의의 및 고찰

1.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통관간소화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관세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이나 수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는 경우, 즉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관세 감면이란 납세의무의 경감과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상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강성훈 외 3명). 이러한 관세감면 제도 중 하나가 소액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소액면세제도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인 통관절차는 수입하려는 자가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중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해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하는 물품의 총 가격이 소액일 경우 간이통관 절차가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국내 관세법규에서 정하는 소액물품면세제도와 통관간소화제도의 관련 규정 및 그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내법상의 관련 규정

(1) 소액물품면세제도 관련 규정

「관세법」 제94조에서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호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세부내용을 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1호의 내용에서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

1) 「관세법」 제94조 제4호

하고 있으며,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고시 [별표 11]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²⁾ 또한, 선물용 여부를 불문한다.

한편,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하는 우편물품의 경우 현장면세와 통관대상으로 구분되는데, 통관대상물품은 현장과세물품, 간이통관물품, 일반수입통관 대상 물품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등 X-ray 검사 결과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현품검사 없이 현장에서 면세 처리하게 된다.

(2) 통관간소화제도 관련 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및 제71조에서는 각각 수입신고의 생략과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수입신고 생략을 규정하고 있는 동 고시 제70조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물품은 선하증권(B/L)만 제시하면 물품 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되며³⁾, 물품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선별방식에 의하여 선별된 물품만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 다음으로,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동 고시 제71조에 따르면 제70조 제1항 각호의 물품 중 과세 되는 물품을 비롯해 i)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150달러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ii) 해당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iii)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iv)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송물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물품의 가격 및 특성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된다(김종덕 외 1명). 이중 목록통관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대상 상용견품 중 미화 150달러(단, 한-미 FTA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3)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제2항

4)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 제3항

신고 절차 없이 통관목록의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절차를 의미한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단, 한-미 FTA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며 미화 2,0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일반적인 수입신고) 방법으로 간이신고를 진행한다. 한편,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 배제물품에 해당하는 통관제한 물품이나,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통관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출입 또는 반송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에서는 각각 3호와 5호의 규정을 통해 우편물⁵⁾과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⁶⁾을 신고 생략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5항에 따라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⁷⁾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7조(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신고)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신고는 ①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특별통관 대상업체 신고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제7조 1호), ② 특급탁송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화물운송장, 송품장, 통관목록에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기재하며(제7조 2호), ③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에게 특별통관대상업체 신고번호를 사전에 통보(제7조 3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편, 우편물과 관련해서는 「관세법」 제258조(우편물 통관에 관한 결정) 및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관세법 시행령」 제260조 내지 제263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다. 동 고시 제2조(정의) 규정에 따르면,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①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동조

5)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3호

6)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5호

7) 「관세청고시 제2020-44호, 2020. 11. 27., 일부개정」

4호 가목), 또는 ②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동조 4호 나목)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통관간소화제도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종류 및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 기준이 개별 고시에 산재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III. 주요국 소액물품 수입통관제도

1. 미국

(1) 개설

미국의 수입통관과 관련된 기본 내용은 미국 관세법(United State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 Chapter 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세법의 하위규정에 해당하는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9 Customs Duties)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입물품 통관유형은 일반통관·약식통관·소액통관으로 구분되며, 과세가격에 따라 물품신고방식이 구분되게 된다. 세부적으로 2,500달러 초과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통관, 2,500달러 이하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약식통관, 그리고 800달러 이하 소액물품은 소액통관이 적용되게 된다.

이중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소액통관과 약식통관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액통관은 목록통관(de minimis entry)이라고도 불리며, 800달러 이하에 물품의 경우 적하목록 방식인 Section 321 또는 ACE 전자통관 방식에 해당하는 Entry Type 86을 통해 목록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1인당 1일 수출국 소비자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묶음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⁸⁾,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약식통관의 경우 수입될 상품의 가치가 2,500달러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간소한 통관절차(informal entry)를 의미한다.

8) Entry Type 86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수출국에서 총 공정 소매가격의 합이 \$8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이하의 내용에서 미 관세법과 연방규칙에서 정하는 소액물품면세제도와 통관간소화제도에 해당하는 비공적인 통관절차(Merchandise eligible for informal entry)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액물품면세제도

관세법 §1321조에서는 “세금 및 관세 징수에 있어 사소한 불일치를 무시하는 것, 또는 무관세품에 대한 입장, 면제금액의 제한에 대해 재무장관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징수되는 수입액에 비례하지 않는 정부 비용과 이에 따른 불편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른 권한을 부여받는다⁹⁾”고 정함으로써 행정상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2호에서는 수입품에 대하여 또는 수입을 이유로 부과되는 세금 및 무관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일 1인이 수입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의 선적국 내 공정소매가격의 합계는 규정에 의해 장관이 지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며 각 목에서 세부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마지막 (C)목에서 기타의 경우 \$800달러 이하에 해당하면 행정상 관세가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본 고의 논의 대상은 이에 해당하는 바이다. 이는 종전 2015년까지 200달러로 적용되던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이후 전자상거래 통관이 급증함에 따라 우범화물 선별검사 강화를 위한 정확한 신고데이터 확보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강연호, 2019).

또한, 위 조문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는 미국 연방규칙 §10.151에서는 수입 물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¹⁰⁾, §10.153의 조건에 따라 항만 책임자는 본 장의 §101.1에 정의된 대로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한 공정한 소매가격이 입증된 상품의 선적에 대해 면세 및 과세를 통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선의의 선물(Bona-fide gifts)을 규정하고 있는 §10.152조에서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가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선의의 목적으로 보낸 선물용 물품에 대해 한 당사자가 하루에 받은 물품의 총 고정 소매 가치가 해당 물품의 선적 국가에서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버진 아일랜드, 괌 및 아메리칸 사모아의 당사자로부터 발송된 물품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면세 및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

9) § 1321. Administrative exemptions

10) 19 CFR 10.151

11) 19 CFR 10.152

또한, §10.153조 면제조건에서는 세관원은 물품이나 소포가 위에서 언급한 §10.151조와 §10.152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조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추가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²⁾.

(3) 통관간소화제도

한편, 미국 연방규칙 §143.21조에서는 비공식적인 통관절차(Merchandise eligible for informal entry)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¹³⁾ 해당 내용에 따르면 2,5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비롯해 다음의 물품에 대해 간소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a) 2,500달러 이하의 물품 또는, (b) 이를 초과하지 않는 분할선적의 일부 또는, (c)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 (d) 면세대상인 가사용품과 개인 휴대품 또는 운송용구, (e) 면세대상을 불문하고 구매계약 또는 판매를 위한 용도가 아닌 중고 가사용품과 개인휴대품, (f) 면세대상을 불문하고 제9802.00.40호에 해당하는 비상업용 가사용품과 개인휴대품으로 2,500달러 이하의 수리 또는 대체물품, (g) 외국에서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2,500달러 이하의 개인 휴대품, (h) 도서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관에 의해 수입되는 도서류, 19 CFR 10.68에 명시된 무대장치, 소품, 상업용 여행 장비 등, (i) 별도 서면 신청에 의해 디자인이 독특하여 상업용으로 판매될 수 없음이 판정된 물품, (k) 미국산 물품으로서 10,000달러 이하의 수리 또는 반품된 물품, (l) 19 U.S.C. 1321(a)(2)에 따른 행정 면제 대상이며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상품 발송물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l)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 U.S.C. 1321(a)(2)에 따른 행정 면제 대상이며 각호 사항에 해당하는 상품 발송물”은 앞서 살펴본 소액면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¹⁴⁾.

2,500달러 초과에 해당해 공식적인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상품의 경우 파트 142 이하의 입국절차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¹⁵⁾.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142.2조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품 도착 후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서 착륙한 후 15일 이내 또는 채권으로 운송된 상품의 경우 도착지 항구에 도착한 후 입국이 필요한 상품은 15일 이내로 세부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¹⁶⁾.

12) 19 CFR 10.153

13) 19 CFR 143.21

14) 19 CFR 143.21(l)

15) 19 CFR Part 142

16) 19 CFR 142.2(a)

같은 조 (b)항에 내용에서는 상품 도착 전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142.3(a)에서 요구하는 입국 서류는 입국이 이루어지는 항구의 제한 범위 내에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고¹⁷⁾, 사전 신고내용이 반입신고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반입신고와 사전 신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반입 시에 제출되는 사전 신고는 § 142.3(b)에 규정된 바와 같이 § 141.63(a) 및 § 142.12(a)(2)에 따라 예비 검토를 위해 제출될 수 있다¹⁸⁾. § 14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반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통관 서류로는 CBP 3461 양식 또는 전자적 제출물¹⁹⁾, § 141.63(a)조에 따른 수입허가증,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CBP 또는 기타 연방, 주 또는 지방 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문서, 신분증 등이 요구된다²⁰⁾.

한편,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관세법 32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입 품목 중 하루 1인당 8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해 디지털 방식으로 신속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Entry Type 86을 신설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강연호, 2019). 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최소한도(800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발송물 제출 및 전자발송을 위한 자발적인 신고 절차에 해당하며, Entry Type 86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Entry Type 86에 대한 절차에 있어 소유자, 구매자 또는 지정된 관세사는 화물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이후 15일 이내에 전자 포털에 해당하는 ACE 프로그램을 통해 CBP 양식을 작성하게 된다.

2. 중국

(1) 개설

중국은 1987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²¹⁾」에 근거해 해외개방 및 항구, 세관의 감독 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17) 19 CFR 142.2(b)(1)

18) 19 CFR 142.2(b)(2)

19) 단, CBP 7533 양식 또는 그 전자적 제출물의 경우 인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한해 CBP 3461 양식 대신 중복으로 사용될 수 있음(19 CFR 142.3(a)(1) 규정 참조)

20) 19 CFR 142.3

21) 주석령[2021] 제81호, 이와 관련해 법제처 산하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번역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라고 번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법령이 「해관법(海關法)」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세 분야에서 중국 관세법을 해관법이라 통칭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관법이라 부르기로 함.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역에서 수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물품의 관세 징수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에 근거해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세를 징수하고 있다.

관세를 규정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5장 이하에 따르면, 수출입화물·출입국 물품의 비준·허가에 대하여 세관은 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²⁾ 또한, 수입화물의 수신인, 수출화물의 발송인, 출입국 물품의 소유주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동법 제54조), 수출입화물의 세후가격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하여 확정하며,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후가격을 세관이 법에 따라 고정하여 정한다(동법 제55조).

또한, 동법 제56조에 따르면 해당 조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관에 해당하는 수출입물품·출입국 물품의 경우 관세를 감액하거나 그 징수를 면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관에서 “규정된 액수 이내의 물품”을 제시하며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할 관세의 감액 또는 면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는 ‘국경을 넘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좌징(跨境), 즉 보세구 이용방식의 무역이 존재하는데 이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이 해외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보세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중국 소비자에게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과 그 하위규정을 중심으로 소액면세 기준과 중국 법제상 국경 간 전자상거래 유형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액물품면세제도

중국의 관세 감면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56조 또는 제58조에 근거한 법정 감면, 특정 감면, 임시 감면으로 구분된다(김성훈 외 3인, 2016). 여기서 법정 감면이란, 별도의 감면 신청 및 화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감면을 의미하며(정재현 외 2인, 2018),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제45조에서는 (1) 발송물 당 관세가 50위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2) 상업적 가치가 없는 홍보물과 샘플, (3) 관세가 면제되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물품, (4) 통관 전 분실된 물품, (5) 입국 및 출국 운송 차량에

2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53조

적재하는 데 필요한 연료, 자재 및 식품 공급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관 전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판단하는 파손 정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²³⁾ 이에 더해 WTO 자료에 따르면, 자가사용으로 수입되어 1인당 1일 8,000위안 미만으로 평가되는 물품²⁴⁾에 대해서도 법정 감면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WTO, 2021).

여기서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발송물 당 관세가 50위안(약 9,250원²⁵⁾)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행우세 즉, 수입세 부과가 면제되는 징수 최저세액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가사용으로 수입되어 1인당 1일 8,000위안(약 148만 원²⁶⁾) 미만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중국 소액면세의 기준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제5장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조례 제57조에서는 개인용으로 수입한 물품은 관세청이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수입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 용도로 수입한 물품이 관세청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수량 내에 있는 경우, 수입 물품 납세자는 수입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사용 수량을 초과하는 합리적 범위 내 수입 물품의 경우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고로, “개인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화물로서 통관업체에 위탁하여 화물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인사용 수량 제한”을 초과할 경우 별도 수입세가 부과된다. 홍콩/마카오발 개인용 우편물은 그 가치가 800위안, 기타 해외지역은 1,000위안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참고로 개인 물품 사용량 제한 초과 시에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다.²⁷⁾

중국 관세감면 물품의 통관행정 절차에 관해서는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 제5장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금 감면 대상 수출입화물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 감

23)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제45조

24) (vi) goods imported for daily use and valued at less than CNY 8,000 per person per day

25) 2024년 2월 14일 고시환율 기준

26) 2024년 2월 14일 고시환율 기준

27) - 서적, 신문/잡지, 교육용 동영상, 컴퓨터, 촬영기기,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 식품, 음료, 귀금속, 완구, 게임, 오락제품, 약품 등: 13%

- 스포츠용품(골프용품 제외), 낚시도구, 섬유제품, TV 촬영기기, 자전거 등: 20%

- 담배, 주류, 주얼리, 골프용품, 고급 시계, 고급 화장품: 50%

면 심사 승인 수속 없이 수출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인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통관간소화제도

중국 내 수출입 물량 급증에 따라 신속한 통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통관제도에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정재현 외 2명). 이러한 대내외적 요구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어떤 도시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하든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식과 기준을 적용하는 전국통관일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통관일체화 이후 수입통관 절차상 가장 큰 변화는 선통관·후심사 방식의 진행을 통해 물품을 먼저 통관시키고 이로써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이뤄냈다는 점이다.

중국 법제상 국경 간 전자상거래 유형은 보세수입, 직구 수입, 일반 수출, 특수구역 내 수출 4가지 모델로 분류된다(관세청, 2019). 이중 본 논문의 논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통관 간소화제도와 관련해 직구수입 통관절차와 보세수입 통관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보세수입 통관절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은 “온라인 보세수입 제도(Cross-border E-commerce)”를 도입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는 과징(跨境)을 이용한 방식의 무역방식이 존재하는데, 이를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벤더가 보세수입 상품을 특수관리구역 또는 지정된 보세물류센터로 운송한 뒤 세관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절차에서 각 주체들은 전자주문서, 결제증명서, 전자운송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납세 수속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다. 세관에서는 해당 서류에 근거해 상품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직구수입의 경우 전자상거래 직후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지불 서비스 기업·물류 기업들이 해관총서에 거래·지불·운송에 관한 전자적 정보를 전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확인을 진행한다. 이후 물품은 관리 장소에 운송된 후 포워더나 대리인이 세관신고서 또는 명세서를 제출하게 된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리스트(跨境电商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에 포함된 품목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개인 소비자의 해외직구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재정부, 해관총서 등 주무부처가 중국 소

비자의 해외 소비품 소비 수요, HS 코드 조정 상황에 따라 리스트를 조정하고 리스트의 비고란에 수입조건을 명시했으며 2016년 4월 1차 리스트 발표 이래 2016년, 2018년, 2019년, 2022년 4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현재 시행 중인 2022년판 리스트는 식품, 의류, 가전, 화장품, 기저귀, 주류, 가정용 식기세척기 등 1441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해외 수입세 감면 한도액을 1회 5000위안, 1인당 연간 2만 6000위안으로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시 일반 화물로 간주해 수입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부과한다.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해외직구 (증치세+소비세)*70%의 해외직구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전자상거래 기업 및 개인은 수출입 업무처리를 위해 각각 통관, 검역, 외환관리, 세수, 물류, 금융 등 관련부서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현재는 물류 전상망과 해관총서 전산망이 연동돼 단일 창구로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9년 1월, 국가 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으로 「전자상무법(电子商务法)」²⁸⁾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징에 부합되는 관리제도를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맞는 관세 징수, 수출입검역 등 종합적인 관리 감독 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되는바(관세청, 2019), 이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우리 관세행정 당국이 주목할만한 점이라 여겨진다.

3. 일본

(1) 개설

일본 통관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령으로는 「관세법(関税法)」²⁹⁾, 「관세정율법」 및 「관세잠정조치법(關稅暫定措置法)」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일본 관세법제의 주요한 특징은 관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세금에 관계되는 법률과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관세법」에서는 동법 제1조에서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부와 화물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세관절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정율법」의 경우 동법 제1조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관세율, 관세부과시의 과세기준, 그리고 관세의 감면·

28) 2018년 8월, 전국인민대회에서 정식 가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9) 1954년 제정(법률 제61호), 최종 개정 2023.06.14.

면제 및 기타 관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수출입물품의 경우 수출입항만정보처리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이하 'NACCS')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관세 납부절차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및 전자상품 거래 등에 관한 준칙³⁰⁾」이 존재하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 구매 물품 통관에 관한 내용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이하의 내용에서 일본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액물품면세제도와 통관간소화제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액물품면세제도

일본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관세, 내국소비세, 지방소비세가 과세되며, 이중 내국소비세에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에 해당한다(류승범, 2017). 「관세정율법」 제14조에서는 무조건적 면세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동조 각호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내각령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동조 18호에서는 총 세관 신고액이 10,000엔(약 8만 8,560원³¹⁾) 이하인 물품(국내 산업 또는 기타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세 면제에 부적절하다고 내각령에 명시된 물품은 제외)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하고 있는 10,000엔의 금액이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소액물품면세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과세 가격격의 합계액이 10,000엔 이하인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및 소비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소비세 이외 기타 내국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은 면세가 되지 않으며,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0,000엔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일본 국내 산업에 미치는 기타 사정을 감안할 때 특별히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³²⁾

30) 2011년 6월 개정, 경제산업성

31) 2024년 2월 15일 고시환율 기준

32) 이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가죽가방, 핸드백, 장갑, 편물제 의류, 가죽제 신발류 제품 등은 면세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참고로 소량 수입품에 대한 간이세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관세정율법」 제3조의3 제3조(과세표준 및 세율)에서는 소액수입화물에 대한 간이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에서 정하는 화물로서 합계액이 200,000엔 이하의 수입화물(일본에 입국하는 자가 그 입국 시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전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송하여 수입하는 화물 제외)에 대한 관세 비율은 이와 관련한 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부칙2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수입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해당 수입화물이 우편물인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신인)가 해당 수입화물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표에 따르는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뜻을 세관에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관간소화제도

일본 「관세법」 제67조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기타 필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NACCS를 활용해 대다수의 수출입 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이상엽 외 2인, 2014). 일본의 경우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특송화물 수입이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간이통관 및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김종성, 2008).

200,000엔 이하 소액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수입화물에 비해 간단한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세가격이 200,000엔 이하의 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도 항공화물운송장(AWB) 또는 상업송장(Invoice)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³³⁾ 단, 수입승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관세정률법」 제14조(무조건적 면세), 제16조(외교관용물품)에서 정하는 면세규정 이외의 세금 감면 규정 적용 대상 물품, 「관세잠정조치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는 경우 간이통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10,000엔 이하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는데³⁴⁾, 서류·신문·잡지·카탈로그 등이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해 운송된 경우 이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³⁵⁾, 이 경우 전용 신고서상에 해당 물품의 품명·수입자·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적하목록을 첨부해 각 품목별 과세가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고절차를 진행하게 된다.³⁶⁾

33) 「관세법 기본통달」 67-4-3(소액물품 간이통관 처리 화물의 세번 등의 처리)

34)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8호

35) 「관세법 기본통달」 67-4-6(적하목록 등에 의한 수입신고)

36) 「관세법 기본통달」 67-4-6(적하목록 등에 의한 신고 절차)

또한, 「관세법」 제8절에서는 ‘우편물 등에 관한 특칙’을 정하고 있으며, 우편물의 경우에도 서신을 제외하고는 수입 통관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성질상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구별하여 간이한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관세법」 제76조에서는 우편물 수출입의 간이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우편물 가격이 200,000엔을 초과하는 경우 동법 67조에서부터 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 수출입 신고 특례, 제출서류 및 검사 절차 등의 규정을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³⁷⁾ 단, 이 경우에도 예외 규정은 존재한다. 일본 우편물 수입통관 절차에 있어 물품이 무세 또는 면세에 해당할 경우 국제우편물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우편사업주식회사가 수취인에게 직접 물품을 배송하게 된다. 이외 세금합계액이 10,000엔 이하에 해당하거나, 1만엔 초과 200,000엔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취인이 배송을 희망하는 경우 우편사업주식회사 세금납부 위탁을 신청한 후 세금 및 취급수수료를 납부하면 세관에서 일본우편주식회사를 경유해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와 함께 우편물을 직접 배송한다.

한편, 과세가격이 200,000엔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의 경우 수입신고를 통해 관세 등을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된다.

4. 호주

(1) 개설

호주는 이민국경보호부(DIBP)와 국경수비대(ABF)에서 통관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ABF는 DIBP 산하의 운영 집행기관으로서 2015년 7월에 신설되어 여행자나 화물 관리 등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관세와 관련된 주요 법규로는 관세법(Customs Act 1901), 수입금지물품에 관한 규정(Customs (Prohibited Imports) Regulations 1956),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95) 등이 있으며, 소액물품 면세와 통관간소화 관련 규정은 관세법과 관세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1,000호주달러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금액은 관세의 과세가격(customs value)으로서 해외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FOB 가격을 의미한다. 이 금액은 통관과 관련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자 2005년에 250호주달러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37) 「관세법」 제76조

2010년 12월에 생산성 본부에서 실시한 ‘소액면세 한도 조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타 국가 대비 면세기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재호 외 2인).

한편 호주는 2018년 7월부터 1,000호주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물품 수입으로 면제되는 세금은 관세뿐이다.

(2) 소액물품 면세기준

호주 관세법³⁸⁾ 제68조에서는 수입물품의 반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동 조항 제(e)호에서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i) 개인이 발송하는 우편물과 (ii) 물품의 가치가 1,000호주달러 또는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다르게 규정된 경우로서 구체적으로 호주 관세율법³⁹⁾ 별표 4에서는 면세품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소액물품(Goods of low value)은 26번 항목과 27번 항목에 열거되어 있다. 26번 항목에서는 가치가 없는 물품(Goods of insubstantial value)을 규정하고 있으며 트로피, 장식품, 메달, 증서 및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물품은 그 가치가 1,000.01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① 담배와 그 제품 또는 주류, ② 호주 밖에서 호주로 들어오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객이나 승무원이 수입하는 물품, ③ 대량으로 주문한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은 그 가치가 1,000.01호주달러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 중 담배와 주류는 같은 법 별표 4의 15번 항목의 개인 소지품(Accompanied personal effects) 면세 규정에 따라 별도로 면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사람이 반입한 경우, 담배는 미개봉된 담배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25그램 그리고 개봉된 담배 한 갑까지 면세하며, 술은 2.25리터까지 면세한다.

한편 27번 항목에서는 가치가 미미한 샘플(Samples of negligible value)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시연용을 제외한 물품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 또는, 특정한 물품을 훼손하여 사용

38) Customs Act 1901, Compilation No. 178, 2023.11.28. 개정.

39) Customs Tariff Act 1995, Compilation No. 90, 2023.09.15. 개정.

할 수 없도록 만든 경우, 예를 들어 신발의 밑창이 신발을 더 이상 착용할 수 없도록 천공되어 있으나 시연용으로는 적합한 경우, ② 의류용 악세사리나 장식품은 그 크기가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카드에 부착되어 있거나 상업용 거래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샘플로 제시된 경우, ③ 절단되지 않은 비소모성 물품으로서 어떠한 라인 중 한 가지 샘플로 수입되었고 그 가치가 2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④ 소비재로서 먹거나 마시거나 시험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훼손되어 그 가치가 2호주달러 이하인 물품, ⑤ 수집가가 서면으로 승인한 종류와 수량 내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소비세 부과대상인 아닌 물품, ⑥ 원산지가 국외이며 인쇄물로 되어 있고 대표 상품의 수입을 권유하고자 견본 도서에 들어가 있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통관 간소화 제도

호주는 통관제도는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일반통관·간이통관·특별통관으로 구분되며 1,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일반 수입신고서를 해야 한다. 일반 수입신고서는 수입자 또는 위임받은 관세사가 작성할 수 있으며, 수입자·물품명세·운송방법·품목분류·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동 신고서는 호주의 통합화물관리시스템인 ICS(Integrated Cargo System)에 제출되거나 국경수비대 카운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해상이나 항공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N10 양식을,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식인 N10(POST) 양식을 사용한다.

한편 1,000호주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은 간이신고(Self Assessed Clearance: SAC)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동 제도는 관세법 제71AAAF조 내지 제71AAAI조 및 제71AAAO조 내지 제71AAAT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품이 해상이나 항공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우편으로 수입되거나 까르네(Carnet)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간이신고서는 화물신고인, 관세사나 ICS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⁴⁰⁾을 통해 ICS에 제출해야 한다.

간이통관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화물신고(Cargo report SAC Declaration), 약식신고(Short format SAC Declaration) 그리고 정식신고(Long format SAC Declaration)로 구분된다. 먼저 화물신고는 화물신고인(Cargo Reporter)⁴¹⁾이 물품의 명세, 특히 수입 제한

40) 수입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ICS에 접근권한을 신청할 수 있다.

및 허가, 검역, 술·담배 해당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거나 물품명세에 SAC 유의어 사전(SAC Thesaurus)⁴²⁾ 속 단어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약식신고나 정식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정식신고는 관세 감면이나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입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하면 더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항공으로 수입되는 대량의 소액물품은 특별통관제도인 약식 화물신고(Abbreviated cargo report), 이른바 HVLV(High Volume Low Value)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약식 화물신고는 관세법 제63A조에 따르면 특정한 종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 특별신고인(Special reporter)이 법적 요건에 따라 작성한 전자 화물신고를 말한다. 여기서 특정한 종류의 소액물품은 특정 통신판매업체(Mail-order House)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나 위탁품 각각의 가치가 1,000호주달러 미만으로서 관세법 제68조의 일반 통관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화물을 말한다. 또한 특별신고인은 매달 최소 1,000건 이상의 화물신고를 할 수 있을 만큼 대량의 화물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Austrian Custom Notice, 2007). 이러한 약식 화물신고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공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며 물품 명세에는 “HVLV” 또는 “mail order” 표시가 요구된다.

5. 영국

(1) 개설

영국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국세관세청(Her Majesty Revenue and Customs; HMRC)에서 통관을 관할하고 있으며 소액물품 면세와 통관 간소화 제도는 관세법(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⁴³⁾), 관세감면 규정(The Customs (Reliefs from a Liability to Import Duty and Miscellaneous Amendments) (EU Exit) Regulations 2020⁴⁴⁾)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41)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송인(용선자 포함)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로서 호주 관세법 제64AAC조(Report to Department of persons engaged to unload cargo)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자를 말함.

42) 화물신고인이 물품 명세와 대조해야 하는 단어나 설명을 표시하는 목록이며 이 목록에는 Drug, Tobacco, Alcohol과 같이 수입금지/제한 품목, 담배, 주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ABF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2021.06.30. 개정.

영국의 소액물품 면세규정은 일반 수입물품과 선물용 수입물품인 경우를 구분하여 면세 한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수입물품은 물품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기준으로 135파운드 이하인 경우에 소액면세가 적용된다. 물품의 내재가치는 상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 물품의 가격을 의미하며 운송비와 보험료(물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서에 별도로 표시된 경우) 그리고 기타 세금 및 부과금(관련 서류를 통해 세관 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은 제외한다. 한편 비상업용 물품의 내재가치는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 물품에 대하여 지급되었을 가격을 의미한다.

(2) 소액물품 면세기준

영국 관세법 제19조에서는 감면(Reliefs)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르면 재무부는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고 그러한 근거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가령 물품의 성격이나 원산지, 관세율을 결정짓는 요소, 물품을 수입하는 목적,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 그리고 물품이 수입되는 상황을 참조하여 규정된다. 한편 소액물품 면세와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관세감면 규정의 참조 서류인 「United Kingdom Customs Tariff: Reliefs from Import Duty⁴⁵⁾」 Section 5에서 영국으로 수입된 가치가 미미한 물품(goods of negligible value)에 대해서 관세가 전부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① 탁송품(consignment)이 영국에 소재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② 탁송품이 영국 외 국가에서 영국에 있는 한 명 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되어야 하고 ③ 물품의 내재가치가 135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선물용으로 수입하는 39파운드 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물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품이 (i) 세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ii) 영국 외부의 개인이 영국에 있는 개인이나 사람들에게 발송해야 하고, (iii) 영국 내 어떤 사람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iv) 생일, 크리스마스나 기념일처럼 가끔씩만 제공되어야 한다.

44) 2020.12.31. 개정.

45) UK Reliefs Document, Version 1.7, 31 January 2024.

39파운드 이하의 선물용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나 일반 소액물품은 관세만 면제된다. 15파운드 이하의 일반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2020년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2021년 1월부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표 1〉 영국의 소액물품 면세기준

구분	물품 가치	면제 세금
일반 수입물품	135파운드 이하	관세 면제, VAT 부과
	135파운드 초과	관세 부과, VAT 부과
선물용	39파운드 이하	관세, VAT 면제
	39파운드 초과 135파운드 이하	관세 면제, VAT 부과
	135파운드 초과	관세 부과, VAT 부과

자료: 정재호 외,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재작성

한편 술이나 담배가 선물용으로 수입되고 각 물품의 내재가치가 39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량제한이 있다. 술은 1리터(스틸 와인은 2리터), 담배는 궤련형인 경우 50개비 등의 수량 한도 내에서 면세되며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된다. 별도로 술과 담배는 선물용인 경우에도 소비세(excise duty)를 납부해야 한다. 향수와 화장수도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중량 500밀리그램(화장수의 경우 0.25리터) 한도 내에서 면세되며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관세청, 2020).

〈표 2〉 영국의 별도면세범위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증류주(알코올의 용량이 22%를 초과하는 것),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80% 이상인 것)	1리터
	증류주, 식전주(와인이나 알코올을 베이스로 한 것), 태피아(tafia), 청주(saké)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의 용량이 22% 이하인 것), 스파클링 와인, 강화 와인(fortified wine)	1리터
	스틸 와인(still wine)	2리터
담배	궤련(cigaret)	50개비
	시가릴로(cigarillo)	25개비
	시가(cigar)	10개비
	흡연용 담배(smoking tobacco)	50그램
향수	향수(perfume)	50그램
	화장수(toilet water)	0.25리터

(3) 통관 간소화 제도

영국의 통관제도는 물품의 종류 및 운송방법에 따라 정식통관·약식통관·우편통관·특별통관으로 구분된다. 정식통관(Standard customs declaration)은 영국 외 국가에서 영국으로 물품이 수입된 때 C1600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고 주로 전자적으로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C88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C88 양식은 도착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 허가(authorisation)의 증거로 사용된다. 해당 양식에는 송하인/수하인 정보, 물품 명세, 상품코드, 선적지/도착지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약식통관(Simplified Customs Declarations)는 관세법⁴⁶⁾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약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관세청(HMR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관세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세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했어야 한다. 또한 허가신청일로부터 4년 동안 신고 사항을 기록하고 요청 시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는 C&E48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해당 양식에는 신청인 정보,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인증 여부, 관세 납부유예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우편통관은 물품이 Royal Mail 또는 Parcelforce Worldwide를 통해서 영국으로 수입된 경우에 적용되며 우편물에는 발송인이 작성한 세관신고서(CN22 또는 CN23)가 부착되어야 한다. 세관신고서 양식은 물품 가격에 따라 구분되며 물품 가격이 27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CN22 양식을, 27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N23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두 가지 양식은 공통적으로 발송인 정보, 물품 명세, 수량, 무게, 가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CN23 양식은 추가적으로 수취인 정보와 (상업용 물품인 경우) HS코드와 원산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통관은 BIRDS(Bulk Import Reduced Data Set)라고 불리며 대량의 소액물품을 한 번에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기존의 LVBI(Low Value Bulking of Imports) 통관을 대신하여 만들어졌으며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은 LVBI는 운송서류(House Air Waybill) 1개당 최대 99개의 품목만 일괄하여 통관할 수 있었으나 BIRDS는 한번에 통관할 수 있는 품목 수의 제한이 없다. 또한 BIRDS는 다음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① 각 우편물(postal packet)은 영국 외 국가에서 영국에 있는 수취인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② 수입 시 각 우편물은 수취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세 감면 물품을

46) Taxation (Cross-border Trade) Act 2018, 2021.06.30. 개정.

포함해야 한다. 또한 ③ 우편물은 국세관세청 공지에 명시된 방식으로 수입되고 ④ 각 우편물의 가치가 135파운드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⑤ 각 우편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아닌 영국 공급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다만 물품이 ① 소비세 부과 대상, ② 금지 또는 제한 물품, ③ 만국우편조약(Universal Postal Convention)에 따라 발송된 물품, ④ BIRDS 통관이 이루어질 때 공동 및 연합 운송 절차에 따라 운송이 해제된 경우, ⑤ 가치가 135 파운드를 초과하는 물품, ⑥ 면허가 필요한 물품은 BIRDS를 이용할 수 없다.

6. EU

(1) 개설

EU는 관세 및 통관과 관련하여 전속 권한을 가지나 실제 통관은 각 회원국별로 별도의 관세행정기관을 두어 각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및 통관절차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EU 전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통관절차를 시행하고자 2023년 5월에 EU 관세당국(EU Customs Authority)의 신설과 EU 공동 데이터 허브(EU Customs Data Hub)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관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2025년까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액물품 면세와 통관 간소화 제도는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⁴⁷⁾, 그 위임규정(UCC-DA)⁴⁸⁾과 관세감면규정(Duty Relief Regulation; DRR)⁴⁹⁾에 규정되어 있다. EU의 소액물품 면세기준은 일반 물품과 선물용 물품인 경우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물품은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150유로 이하인 경우에 관세를 면제한다. EU는 2021년도 6월까지의 22유로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했으나 같은 해 7월부터는 동 면세한도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또한

47)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October 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48)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5/2446 of 28 July 2015 supplementing Regulation (EU) No 952/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detailed rules concerning certain provisions of the Union Customs Code.

4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of 16 November 2009 setting up a Community system of reliefs from customs duty(codified version).

같은 날부터 150유로 이하의 B2C 물품의 통관과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간소화하기 위한 신규 플랫폼인 수입원스톱샵(Import One Stop Shop; IOSS)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이미영, 2021).

(2) 소액물품 면세기준

관세감면규정 제23조에서는 가치가 미미한 물품(goods of negligible value)으로서 물품의 내재가치가 150유로 이하인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내재가치의 정의는 UCC 위임규정 제1조 제4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재가치는 물품을 EU 관세영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하며 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한다.

한편 선물 등 개인 간에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그 가치가 45유로 이하인 물품은 상업적 성격을 띠지 않는 경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⁵⁰⁾ 가끔 발생하는 경우, 물품의 성격이나 수량으로 보아 수취인이나 그 가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무료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상업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본다.⁵¹⁾

EU는 전자상거래 확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액 수입물품이 급증하면서 2021년 7월부터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VAT De Minimis)를 폐지하고 22유로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시작했다. 다만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45유로 이하의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유지된다(European Commission, 2022). 따라서 일반 소액물품은 관세에 한정하여 면제되며 선물용 소액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된다.

한편 위 소액물품 면세기준은 술, 담배, 향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 제품의 면세기준은 관세감면규정 제27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표 3〉 EU의 별도면세범위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증류주(알코올의 용량이 22%를 초과하는 것),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80% 이상인 것)	1리터
	증류주, 식전주(와인이나 알코올을 베이스로 한 것), 태피아(tafia), 청주(saké)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의 용량이 22% 이하인 것), 스파클링 와인, 리큐르(liqueur) 와인	1리터
	스틸 와인(still wine)	2리터

50) 관세 감면 규정, 제26조.

51) 위의 규정, 제25조 2항.

구분	면세한도		비고
담배	궐련(cigaret)	50개비	시가의 최대 무게는 각각 3그램으로 한정함
	시가릴로(cigarillo)	25개비	
	시가(cigar)	10개비	
	흡연용 담배(smoking tobacco)	50그램	
향수	향수(perfume)	50그램	
	화장수(toilet water)	0.25리터	

(3) 통관 간소화 제도

통관 간소화와 관련된 EU의 통관제도는 제출되는 증빙서류(Dataset)에 따라 SRDS통관·표준통관·간이통관·우편통관으로 구분된다. 먼저 SRDS(Super Reduced Dataset)통관은 UCC 위임규정 제143a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감면규정 제23조제1항(소액물품) 또는 제25조제1항(개인 간 거래)에 따라 면세를 적용받는 경우,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특정 데이터세트(UCC-DA 부속서 B의 H7)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H7 declaration). 특정 데이터세트는 이른바 ‘대폭 감소된 데이터세트(SRDS)’이며 관세 면제 대상인 경우, 즉 B2C, B2B 또는 C2C 거래에서 물품의 내재가치가 150유로 이하인 경우 또는 C2C 거래에서 물품의 내재가치가 45유로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SRDS는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가 폐지되면서 가중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되었으며 표준신고서의 3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요구한다.

한편 표준통관(Standard customs declaration)도 소액물품의 수입통관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가령 소비세(excise)가 부과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 등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된다(H1 declaration). H1 데이터세트는 H7보다 데이터를 3배 더 많이 요구한다.⁵²⁾ 신관세법 제166조에 따르면 표준신고서에는 통관 절차상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full dataset)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이통관(Simplified declaration)은 신관세법 제1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62조의 표준신고서의 특정 항목이나 제163조의 증빙서류를 생략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I1 declaration). 간이신고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2) European Commissi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LOW VALUE CONSIGNMENTS-VAT E-COMMERCE PACKAGE, Guidance for Member States and Trade”, 2022.09.15., p.32.

우편통관은 UCC-DA 제144조에 따라 물품의 가치가 1,000유로 이하이고 수입금지 및 제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우편사업 운영자가 축소된 데이터세트(reduced data set; H6)를 제출함으로써 신고할 수 있다(H6 declaration). H6은 EU의 수입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물품에 CN22 또는 CN23 신고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표 4〉 EU 소액물품의 통관제도

종류	데이터세트	적용 대상	근거 규정
SRDS통관	H7 (Super Reduced Dataset)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 - 150유로 이하의 물품 - 45유로 이하의 C2C 거래 물품	UCC-DA 제143a조
표준통관	H1 (Full Dataset)	모든 물품	UCC 제162조
간이통관	I1	모든 물품	UCC 제166조
우편물통관	H6	1,000유로 이하의 물품	UCC-DA 제144조

출처: European Commission, "IMPORTATION AND EXPORTATION OF LOW VALUE CONSIGNMENTS-VAT E-COMMERCE PACKAGE, Guidance for Member States and Trade", 2022.09.15., p.69.

7. 소결

상술한 내용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주요국에서는 소액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여 부가가치세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세원칙은 반입경로가 해상이나 육상, 항공 중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또한 그 형태가 일반화물이거나 특송화물, 혹은 우편물인지를 불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존 200달러를 기준으로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해오던 것을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내국소비세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한 데 대한 세액 손실의 우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호주의 경우 2018년경, 1,000호주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한 바 있으며, 이에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 있어도 10%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되었다(중소기업신문, 2021).

영국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15파운드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던 정책을 폐지하여 모든 판매자는 주기적으로 영국 국세관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2021년 7월부터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개정법」을 시행하며, 기존 22유로 이하의 소액 역외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특히 배송비를 포함해 150유로 이하의 상품은 IOSS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정 개정 추세를 살펴볼 때, 각국 규정 개정에 따른 현지 세무 리스크 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액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 국내 관련 법령 또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표 5〉 주요국 소액면세 및 통관 간소화 제도 비교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영국	EU
관세당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해관총서(海關總署)	관세국	이민국경보호부(DIBP) 및 국경수비대(ABF)	국세관세청(HMRC)	각 회원국별 상이
면세기준	USD 800 이하	주문당 RMB 5,000/ 1인당 연 RMB 26,000 제한	JPY 10,000 이하	AUD 1,000 이하	GBP 135 이하 (선물용: GBP 39 이하)	EUR 150 이하 (선물용: EUR 45 이하)
수입세 부과	부가세 없음	세금 부과	부가세, 소비세 면세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부과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부과 (단, 선물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부과 (단, 선물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배제대상	담배, 주류, 향수	인기품목(포지티브)리스트	담배, 주류, 향수, 미국	담배, 주류	담배, 주류, 향수	담배, 주류, 향수
근거법령	「관세법」 및 「면방규칙」	해외지구 리스트	「관세정률법」 제14조 무조건적 면세 및 「관세정률법 시행령」	관세율법 별표 4	관세감면규정 참조서류	EC No 1186/2009
간이통관	USD 800 초과 USD 2500 이하	-	JPY 200,000 이하	AUD 1,000 이하	-	-
목록통관	USD 800 이하	-	JPY 10,000 이하	AUD 1,000 미만	GBP 135 이하	EUR 150 이하 (C2C 거래: EUR 45 이하)
우편통관	-	총 세액 RMB 50 이하 (주문 당 RMB 1,000 제한)	JPY 200,000 이하	-	GBP 270 이하(CN22) GBP 270 초과(CN23)	EUR 1,000 이하
근거법령	「관세법」 및 「면방규칙」	해외지구 리스트	「관세법」, 「통관업법」, 「NACCS법」	관세법	관세법 별표 1	UCC, UCC-DA

소액면세

통관
간소화
제도
적용대상

IV. 개선방안

1. 소액면세 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마련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래로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의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해 오고 있으며, 이는 조세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의 과다 및 납세자 편의의 측면을 고려한 부분으로 이해된다(정다운 외 2인, 2020).

앞서 해외 주요국 비교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액면세제도와 관련한 해외 주요국들의 관련 제도 기준은 각 국가마다 큰 상이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에 이르렀고,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가 소비용 수입물품의 재판에 따른 탈세 행위 등이 발생함에 따라 그 규모가 당초 입법 당시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호주,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 국내 관련 법령 또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2. 통관간소화제도 관련 규정 재정비

국내 통관간소화제도의 경우 신고특례제도로 특송물품의 경우 간이통관 및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편물 통관의 경우 간이신고 및 현장면세제도의 운영을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관세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납부와 동법 제241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수입신고를 통합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직구의 경우 그 절차에 있어 일반적인 국제거래 절차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고,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프로세스에 맞는 적절한 신고 프로세스 마련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개정 동향을 살펴보면, 소액 면세물품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간이신고 절차 신설로 전자적 형태의 신고내역 확보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우범화물 선별검사 등 위험관리의 측면에서도 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요건확인 물품에 대한 간소화된 통관절차 적용을 통해 신고자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는 측면도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경우에도 지난 2019년부터 국가 간 전자상거래 관련한 「전자상무법(电子商务法)」을 시행해 전자상거래 특징에 부합되는 관리제도를 구축했으며, 세부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맞는 관세 징수, 수출입검역 등 종합적인 관리 감독 체제를 구축했다고 평가되는바, 이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관세행정 당국이 주목할만한 점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관세법 및 통관제도 또한 적절한 절차 재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된다.

한편, 미국 수출입 통관체계에서는 미국 관세법(United State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 Chapter 4), 그리고 그 하위규정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19 Customs Duties)에서 대부분의 간소화된 통관절차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 또한 「관세법」 이하 각 수입 형태별 관련 고시에 따라 그 기준이 산재되어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관세법 체계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과 다수의 고시에 따라 그 기준이 산재되어 제시되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혼란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한 규정 또한 재정비가 이루어질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래로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의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해 오고 있는데,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모가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면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통관 행정 측면에서 물량 과부하가 유발되고 이에 따라 통관, 리스크 관리, 세금징수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통관 간소화제도와 관련한 내용도 함께 고찰해 보았다.

해외 주요국 소액물품면세제도의 경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소액의 수입물품에 해당할 지라도 기준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은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통관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생산 재화와 동일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과세상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GATT의 소비지국 과세원칙⁵³⁾에 부합되는 법률 구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관련 제도 또한 이러한 취지를 국내법화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면세대상 소액물품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일지라도 해당 물품의 관세 면세는 인정하되 부가가치세는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관간소화제도와 관련해서도 전자상거래 확대와 함께 각국에서는 해외직구 등 해당 무역거래의 특성에 맞는 관련 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관세행정 당국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완성도 높은 정책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3) 「부가가치세법 조문별 해설」

참고문헌

- 강성훈, 이재선, 노영예, 김미정. (2016). 주요국의 통관제도-일본Ⅱ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강성훈, 김다량, 노영예, 양지영. (2016).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비교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연호. (2019).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변경(321 entry) 관련 동향. 주미대사관.
- 관세청. (2019). 주요 관세당국 전자상거래. 연구용역.
-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2020). 신규 협정 체결국의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영국편).
- 김중성. (2008). 일본의 통관제도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11(4), 5-25.
- 김종덕, 김울성. (2019).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른 통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31(1), 181-206.
- 류승범. (2017). 통관제도 효율성 제고에 따른 통관 활성화 방안 연구 : -주요국 통관제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영. (2021). 독일, 강화되는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제도. KOTRA.
- 이상엽, 김미영, 김수영. (2014). 주요국의 통관제도-일본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다운, 이형민, 이성현. (2020). 소액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해외사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재호, 김수영, 김미영. (2012).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2018). 중국, 전자상거래 법률인 전자상무법 제정. *글로벌 물류기술 주간동향*, 제591호.
- Australian Customs Notice. (2007). Cargo reporting procedure for high volume low value consignments. 2007/10.
- UK Reliefs Document. (2024). Version 1.7.
- WTO. (2021). Trade Policy Review: China.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https://www.cbp.gov/trade/trade-enforcement/tftea/section-321-programs/entry-type-86-frequently-asked-questions>
- 중소기업신문. <https://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17>.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euTradeNewsDetail.do?no=1833494>.
- ABF. CURRENT TARIFF CLASSIFICATION - Schedule 4.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tariff-classification/current-tariff/schedule-4-by-law>.
- ABF. Definition of cargo reporter.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cargo-reporting-and-transhipped-goods/cargo-reports>.
- ABF. HOW TO IMPORT-Declarations for imported goods.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how-to-import/import-declaration>.
- ABF. <https://www.abf.gov.au/>.
- Australian Government(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

- European Commi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Customs formalities for low value consignments".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ustoms-procedures-import-and-export-0/customs-procedures/customs-formalities-low-value-consignments_en.
- European Commission. https://commission.europa.eu/index_en.
- EUR-Lex. <https://eur-lex.europa.eu/homepage.html>.
- Global Compliance News. "European Union: Creation of an EU Customs Agency and an EU Customs Data Hub?". https://www.globalcompliancenews.com/2023/05/18/https-www-internationaltradecomplianceupdate-com-2023-05-15-creation-of-an-eu-customs-agency-and-an-eu-customs-data-hub-_05152023/.
- GOV.UK. "Apply to use simplified declarations for imports". <https://www.gov.uk/guidance/using-simplified-declarations-for-imports>.
- GOV.UK. "Apply to import multiple low value parcels on one declaration". <https://www.gov.uk/guidance/apply-to-import-multiple-low-value-parcels-on-one-declaration>.
- GOV.UK. "Changes to VAT treatment of overseas goods sold to customers from 1 January 20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anges-to-vat-treatment-of-overseas-goods-sold-to-customers-from-1-january-2021/changes-to-vat-treatment-of-overseas-goods-sold-to-customers-from-1-january-2021>.
- GOV.UK. <https://www.gov.uk/>.
- GOV.UK. "Import VAT and Customs Duty on gifts". <https://www.gov.uk/guidance/import-vat-and-customs-duty-on-gifts>.
- GOV.UK.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C88 (statu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mport-and-export-single-administrative-document-c88-status>.
- Hemisphere. "LVBI Authorisation – What Has Changed?". <https://www.hemisphere-freight.com/lvbi-accreditation/>.
-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
- Royal Mail. <https://www.royalmail.com/business>.
- Your Europe. https://europa.eu/youreurope/index_en.h

ABSTRACT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Duty Exemption and Customs Procedures Simplification for the Consignments below De Minimis Thresholds

Hyo-Eun Jang·Myeong-Hee Son

Generally, value-added tax and customs duties are levied on goods imported into a country. However, there is concern that the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on low-value goods or goods imported in small quantities can cause an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 Therefore, the Customs Law of Korea provides for customs duty exemption for consignments below the de minimis threshold, and such an exemption can also be found in the customs regulations of various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customs duty exemption for consignments below the de minimis threshold stipulated in Korean law and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major countries that have adopted similar exemptions to understand the direction in which the Korean customs duty exemption should be developed. Of particular note regarding the countries studied is that, with respect to consignments below the respective de minimis thresholds that are subject to customs duty exemption, value-added tax is levied at the time of sale if the total value of the amount imported is less than a prescribed level, while it is levied at the customs clearance like other imported goods if the total value exceeds a prescribed level. This trend in legislation can be considered to be in alignment with the destination principle⁵⁴⁾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the purpose of which is to maintain tax equity between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and protect the domestic industries of importing countries by enabling importing countries to impose on imported goods the same burden levied on like domestic products. Therefore,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major countries that have adopted the said system, the relevant regulations in Korea should be amended so that value-added tax can still be levied on consignments below the de minimis threshold that are subject to customs duty exemption.

| **Keywords** Duty Exemption De Minimis Thresholds, Simplification of Customs Procedures, On-line Overseas Shopping, List Clearance, Customs Clearance System

54) Commentary on the Value-Added Tax Act.